

낙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군 산 시 장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수질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낙시어선업자(이하 “낙시어선업자”라 한다), 선원 및 낙시어선의 이용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지시사항

제3조(영업시간 등)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라북도 관할수역 내에서 영업하는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하절기(4월1일~10월31일)에는 04시00분부터 22시00분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1일~익년3월31일)에는 05시00분부터 20시00분까지로 한다.

□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야간항해가 가능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4의3에 의한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정성 검사 확인을 받은 낚시 어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영업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갯바위 낚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항의 영업시간에 불구하고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낚시어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4의3에 의한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낚시어선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제4조(영업구역의 제한 및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 다른 법령 등에서 출입 및 안내금지,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선상 및 갯바위 낚시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구역 내 낚시금지구역 지정(10개소)

금지구역		소재지	좌표	사유
도서명	위치			
직도	전체	옥도면 말도리	35-53-16N 126-04-32E	공군 해상사격장
관리도	서방	옥도면 관리도리	35-48-00N 126-22-15E	급경사 절벽,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 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명도	북방	옥도면 명도리	35-51-13N 126-20-40E	“
흑도	전체	옥도면 관리도리	35-49-32N 126-22-21E	무인도,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역경	끝단	옥도면 개야도리	36-02-10N 126-30-51E	“
솔푼서	전체	옥도면 말도리	35-51-48N 126-21-00E	간출암, 파도등 긴급상황 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지난
가마우지 바위	전체	옥도면 장자도리	35-49-09N 126-23-16E	가마우지 보호 및 장자도 관광자원
신시도	배수갑문 일원	옥도면 신시도리	35-48-56N 126-28-38E	배수갑문 개방 안전사고발생 상존
가력도	배수갑문 일원	옥도면 비안도리	35-43-53N 126-31-25E	배수갑문 개방 안전사고발생 상존
가진여	전체	옥도면 어청도리	36-06-22N 125-59-50E	바위 자체가 급경사가 심하여 추락사 등 안전 사고발생 상존

※ 신시도, 가력도 배수갑문에서 반경500m 이내 해상 낚시금지

③ (속력제한구역 지정)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교량, 양식장 부근 운항 시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운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양식장 부근 운항 시 : 10노트 미만

▣ 해상교량 부근 운항 시 : 12노트 미만

(선유교, 장자교 10노트 미만)

교량 명칭	위치	길이×폭×높이
고군산대교	군산시 옥도면	400*18*15
장자교	군산시 옥도면	295*20.5*10.8
선유교	군산시 옥도면	300.7*16.5*15.7
신시해안교	군산시 옥도면	440*16.5*3
신시교	군산시 옥도면	450*17*6
무녀교	군산시 옥도면	220*17*7
동백대교	군산시 해망로	1335*20.9*4.5

제 3 장 준수사항

제5조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선상낚시와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 안내하였을 경우 낚시객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구

동동의 착용 지시 및 통신기기 작동 이상여부 확인 등)하고 갯바위 하선 승객은 기상악화 등 비상시 일시에 전원 입항할 수 있도록 낚시승객 정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낚시어선업자는 하선 승객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위험상황 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모두 신고 입항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조(승객의 준수사항)

- 승객은 낚시어선업자가 전달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승객은『수산자원관리법』등에서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 후 승선하여야 한다.
-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낚시어선에 주류를 반입할 수 없으며,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영업시간 외 항해요구 및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5. 선상 및 갯바위 등에서 쓰레기 투기·취사·야생 동식물 등을 반출하는 행위.
 6.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 승객은 출항 시부터 안전하게 입항할 때까지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8.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9.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수질오염의 방지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질오염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는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자원의 보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승객은 수산자원 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변경 고시』
제2018-58호는 폐지한다.